##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0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해철 • 추미애 • 안태준

송옥주 • 진성준 • 이병진

주철현 · 김태선 · 임호선

김주영 · 김정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법률 제 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창고시설(제18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18의2. 생활물류시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활물류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	②
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18. 창고시설</u>	<u>18. 창고시설(제18호의2에 따른</u>
	건축물은 제외한다)
<u>&lt;신 설&gt;</u>	18의2. 생활물류시설(「생활물
	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생활물류시설)
19. ~ 29. (생 략)	19. ~ 29. (현행과 같음)